

영등포구의회
제21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발의】



2018. 10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9호로 2018년 10월 12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다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라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.

다. 입법예고(2018. 10. 5. ~ 10. 11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

- 안 제2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청소년 가장,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계층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규정하였으며

- 안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~제6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설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,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

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5. 7. 24.>

■ 『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

제13조(주택용 소방시설)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"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. 19.]

■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8. 6.>